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8일,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9.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2.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수진의원)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율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2024년 현재, 영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소 중 이용업은 15,374개소, 미용업은 186,935개소로, 최근 ‘K-뷰티’ 확산¹⁾으로 국내 이·미용 산업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도 지적되는바, 개정안은 이·미용사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미용사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2024년 방한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한국 방문 중 뷰티/미용 관광 참여가 2023년 10%에서 2024년 12.7%로 증가하였고, 참여 활동별 만족도 항목에서 뷰티/미용 만족도는 2023년 92.1%, 2024년 94.9%로 나타난 바 있고(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외래관광객 조사 보고서」), 2025년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K-뷰티 엑스포 코리아’(박람회) 행사도 개최된 바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하위 법령 개정 및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시행규칙 개정 및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부칙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안 부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2026년 1월 1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u>이 법은 2026년 1월</u> <u>1일부터 시행한다.</u>	부 칙 ----- <u>공포 후 1년</u> <u>이 경과한 날</u>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